



제422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국 방 위 원 회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모성보호를 위한 필수보직기간 예외 규정 신설〉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605호)

2025. 2.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17.
3. 회부연월일 : 2024. 12.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일정지역 거주자를 경력채용하는 경우 5년간 전보가 제한 됨.

최근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공무원 구분모집자도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사유인 경우, 필수보직기간(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를 허용하였음.

이에 일정지역 거주자 경력채용 공무원도 출산·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보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7조 제5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일정지역 거주자 경력채용 군무원에 대해 필수보직기간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출산·양육 등 모성보호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전보를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신규 채용) ① ~ ④ (생략) <u><신설></u>	제7조(신규 채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轉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u> <u>1. 출산, 육아, 모성보호 등을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경우</u> <u>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u>⑥ (현행 제5항과 같음)</u>
<u>⑤ (생략)</u>	

- 현행법은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 및 환경을 고려하여, 연고지 등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해당 지역의 부대 또는 기관에 근무할 군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 채용 후 5년간 다른 부대나 기관으로 전보(轉補)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¹⁾.

1) 「군무원인사법」 제7조(신규 채용)

제7조(신규 채용) ① 군무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 다만, 도서·벽지 등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경우,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산부인과, 산후조리 시설 등이 부족하여 출산과 양육 환경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공무원 구분 모집자의 경우,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사유가 있을 때 필수보직 기간(5년)이 지나지 않아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를 허용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였음.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5191호, '25. 1. 7. 개정)	
기 존	개 정 안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⑨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 부터 5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제5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고위공무원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을 말한다)에 전보될 수 있다. <u>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보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u>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⑨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 부터 5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제5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고위공무원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을 말한다)에 전보될 수 있다. <u>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u>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보하는 경우 2. <u>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u>

7.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환경을 고려하여 연고지 등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있는 부대 또는 기관에 근무할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 ④ 제2항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은 채용 후 5년간 전직(轉職)되거나 해당 부대나 기관이 아닌 다른 부대나 기관으로 전보(轉補)되지 아니한다.

□ 이에 개정안은 「공무원임용령」의 개정 사례를 군무원에게도 적용하여, 출산 및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보 가능토록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법체계적 통일성 측면에서 일반직공무원은 대통령령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규정하였으나 군무원의 경우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 제7조제5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위임할 경우, 대통령령에 모성보호와 무관한 사유까지 포함될 수 있는 위임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기에 법적 명확성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규정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개정안 부칙에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국방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며, 「공무원임용령」과 동일한 체계로써 개정안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대신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요청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10